[첨부1]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e모델하우스 및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견본주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e모델하우스(http://www.harrington-bwd2.co.kr)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harrington-bwd2.co.kr)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불가하고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3℃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등)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분양 상담전화(☎053-744-8666)**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 **단지명**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3-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4층, 지상42~44층 3개동 아파트 총 419세대 [별도 분양예정 : 오피스텔 74실, 근린생활시설]
중 특별공급 178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4세대 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구분			84A	84B	84C	합계
기관별 세대수 배정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외	4(12)	2(6)	2(6)	8(24)
		장기복무제대군인	2(6)	1(3)	1(3)	4(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12)	1(3)	1(3)	6(18)
	중소기업근로자		4(12)	2(6)	1(3)	7(21)
	장애인		5(15)	2(6)	2(6)	9(27)
계			19(57)	8(24)	7(21)	34(102)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Ⅱ.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정 (예정)	비 고
대상자 명단 회신	2020년 11월 19일(목) 12시까지	*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
입주자모집공고	2020년 11월 12일(목)예정	* 일간신문, 당사 홈페이지(http://www.harrington-bwd2.co.kr),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견본주택개관 (※사전예약제 운영)	2020년 11월 13일(금)예정	* 당사 홈페이지(http://www.harrington-bwd2.co.kr) * 당사 견본주택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 ※ 견본주택 사전예약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	2020년 11월23일(월)예정	* 인터넷 신청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8:00~17:30)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0년 12월 01일(화)예정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자격확인서류 제출일	2020년 12월 05일(토) ~ 12월 10일(목) (6일간) 예정	* 장소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견본주택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 (시간 :10:00~16:00)
계약 체결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7일(목) (4일간) 예정	* 장소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견본주택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 (시간 :10:00~16:00)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대상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하여 [첨부2]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을 사용하여 회신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금액 요건을 갖추신 분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입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습니다.
- 중소기업근로자, 10년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구 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③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해당주택 건설지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추천 가능하며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2.예정)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하여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기관추천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정하여 선정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자만이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 동·호수 추첨은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단,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IV.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한국감정원 청약Home 및 사업주체)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및 자격확인서류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신청시	O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무주택/계약자)	-	접수 장소에 비치 (특별공급신청서는 견본주택 청약시 필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경우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청약자 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기타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

■ **사업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3-4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www.harrington-bwd2.co.kr**

■ **분양문의 : 053-744-8666**

[첨부2]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 양식

타입	번호	유형	시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84A	1	장애인	XXX	XXX	XXXXXX-XXXXXX	XXX-XXXX-XXXX
84A	예비1	장애인				
84B	1	장애인				
84B	예비1	장애인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2020.11.19(목) 12:00시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번호는 추천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3]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특별공급 배정현황

1. 배정현황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계	
084.4300A	84A	189	19	19	38	5	13	94	95
084.3600B	84B	77	8	8	15	2	5	38	39
084.4600C	84C	75	7	7	15	2	5	36	39
108.2500	108	78	-	8	-	2	-	10	68
합계		419	34	42	68	11	23	178	241

※ 민형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20.09.29. 신설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따릅니다.

2. 관련자료

구분			배정 세대		근거자료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10%) 34세대	국가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외	8	24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장기복무제대군인	4	1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6	18	
	중소기업근로자		7	21	
	장애인		9	27	
	계		**34**	**102**	

※ 상기 배정세대 및 예비추천인은 각 기관에서 본 사업주체에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추천인의 경우 각 타입별 300%이상 배정합니다.